

광주지방법원 2021. 4. 20 선고 2020가단5251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훈

담당변호사 곽현준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동으로

담당변호사 김수지

변론 종결 2021. 3. 16.

판결 선고 2021. 4.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7. 10. C, D과, 위 C, D 공유(C 지분 470/1131, D 지분 661/1131)인 평택시 E 임야 1,131㎡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7,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7. 17.까지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5. 7. 20.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 데, 위 매매계약은 C의 언니인 원고가 사실상 중개한 것으로서 당초 피고와 위 C, D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나. 그런데 C, D에 대한 금전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7451호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써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2017. 4. 26.이 사건 매매계약 중 D 지분 부분은 계약 체결 당시 D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고 볼수 없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고, C 지분 부분은 사해행위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2433호 사건에서는 2017. 11. 17. 이 사건 매매계약 중 C 지분 부분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의 원상회복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83,190,000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후 위 판결은 상고심 사건에서의 2018. 2. 13.자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으로 2018. 2. 19.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에게 앞서 본 판결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하자,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에게 2018. 3. 13.3,000만 원, 2018. 3. 16. 5,000만 원, 2018. 3. 28. 10,440,428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90,440,428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사실상 중개인인 원고를 통하여, 원고 및 매도인인 C에게 위 판결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2018. 3. 16. C의 딸인 F 명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 금융기관 계좌로

5,000만 원이 계좌이체 되었는데, 당시 피고 계좌의 통장기록에는 'F 땅 합의금'으로 기재되도록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2,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원고에게 앞서 본 판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와 '원고가 5,6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는 향후 이 사건매매계약과 관련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화해계약을 하기 위해 교섭하는 과정에서, 우선 조카인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위돈을 송금해 주었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의 협박 및 억지 주장으로 화해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5,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써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매도인인 C의 연락처 등을 알지 못하여, 피고에게 부동산을 소개하고 C의 대리인 역할을 한 원고에게 판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C이 5,6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는 문자를 보내왔으며, 그 후 위와 같이 5,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따라서 위 5,000만 원은 C이 자신의 딸인 F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F과 C의 관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 원고는 피고의 이웃으로서 피고의 이혼문제를 상담해 주기도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 피고가 매수할 부동산을 찾아 함께

돌아다니기도 하는 등 피고와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매매계약을 사실상 중개하기도 한 관계로 앞서 본 판결과 관련한 피고와 C 사이의 분쟁 해결에도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 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여도, 화해계약 내지 합의의 당사자나 합의금의 지급 주체는 C이고,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의 위 화해계약 내지 합의를 주선하는 위치에 있었던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여도 원고가 앞서 본 판결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것인 점 등 앞서 든 증거자료 및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 및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위 5,000만 원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화해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단계에서 원고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우